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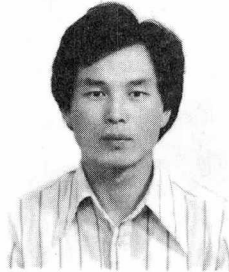
방화의 동기를 사전에 제거해야

1. 머리말

방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화는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시킬 뿐만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으로 인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또한 특히 우려되는 것은 방화가 다른 범죄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화는 그 시대의 사회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어 도시화, 산업화된 사회일수록 방화가 많이 발생한다. 방화는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기가 활황일 때는 방화가 감소하며, 경기가 침체되어 휴·파업과 실업이 늘어나고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 방화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 선진국의 경우 방화로 인한 재산피해가 전체 화재피해의 1/4 ~ 1/3에 도달하여 있으며 70년대 중반부터 방화에 관심을 갖고 국가적 차원은 물론 보험회사에서도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방화피해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방화가 전체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원인 및 범죠타양상이 선진국형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머지않아 방화피해가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채 수 주
〈위험관리부 과장〉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발생 실태

가. 우리나라와 일본

내무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80년대 초까지만해도 방화로 인한 화재건수가 전체화재의 3~4%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80년대에 계속 증가하여 89년도에는 1천1백76건의 방화화재가 발생하여 전체화재의 9.3%를 차지하였다. 또한 방화로 인한

사망자 점유율은 80년대에 2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산피해도 점증하고 있다.

화재보험 측면에서는 '89 회계년도 원수보험금이 7백 15억원(장기화재 제외)으로 이중 방화로 인한 지급금액이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방화로 인한 화재건수 및 사망자 점유율은 우리나라의 2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화재 건수 및 점유율도 80년대 중반 이후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사망자는 계속 40%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나. 구미 국가

구미각국의 최근 방화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

〈우리나라와 일본의 방화발생 현황〉

연도	우리나라			일본		
	건수	사망	피해액	건수	사망	피해액
1974	142 (3.6)	11 (3.8)	0.2 (0.1)	3,902 (5.8)	323 (19.6)	72
1977	165 (3.1)	34 (13.7)	4.5 (10.2)	5,417 (8.5)	559 (29.3)	95
1981	233 (4.0)	55 (18.9)	1.9 (1.5)	6,529 (10.7)	745 (37.8)	124
1985	455 (5.6)	58 (22.3)	3.2 (2.1)	8,387 (14.0)	658 (37.7)	152
1987	775 (7.6)	58 (18.1)	11.4 (7.7)	8,599 (14.6)	771 (41.5)	125
1988	945 (7.6)	85 (20.5)	11.0 (3.2)	8,912 (14.9)	950 (44.9)	129
1989	1,176 (9.3)	95 (21.3)	13.9 (6.2)	8,954 (16.1)	712 (40.8)	

○ 자료 : 화재통계연보 (내무부), 일본소방백서
○ 피해액은 방화로 인한 억단위의 피해액으로 우리나라는 (원), 일본은 (엔)임
○ ()는 점유율로서 전체화재중 방화가 차지하는 비율(%)임

으나 미국의 경우 70년대 중반에 방화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등장하여 80년대 초까지 방화가 급증하였다. 이후 보험단체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예방노력과 경기호전으로 80년대에는 방화피해가 감소 또는 정체되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상황이 바뀌어 방화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유럽 국가에 있어서도 미국과 비슷한 추세와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Swiss Re의 최신자료에 의하면 서부유럽 각국의 방화로 인한 손해액은 전체화재피해의 3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3. 보험측면의 방화 특성

방화는 대부분 정신적 희열이나 결합, 또는 경제적 목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여러가지의 동기가

존재한다. 즉 원한, 울분, 방화광, Vandalism, 범죄은폐, 폭력, 테러, 경제적 이익(보험사기 등) 등이다.

이들 여러가지 형태의 방화는 그 목적과 동기에 따라 각각 특성이 상이하다. 여기에서는 보험회사 측면에서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한 사기방화(Fraud Arson)의 특성을 고찰한다.

가. 보험계약자의 행동

(1) 사고 발생전

- 보험금액의 증액
- 미납 보험료의 지불
- 보험증권에 표시된 보상범위를 문의 또는 확인
- 보험증권을 Reinstatement Basis에서 Actual Cash Value Basis로 변경

(2) 사고 발생후

- 사고 처리가 빨리 종결되기를 갈망 또는 무관심으로 가장

◦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법률적, 기술적인 사항에 특별한 지식이 있음

◦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기 위하여 실제 손해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기꺼이 수락

◦ 행동이 보통 때와 다르다.

나. 사고 사항

- 사고원인의 불명확
- 보상에 관련된 모든 회계기록의 파손
- 화재가 주말 또는 공휴일의 야간에 발생
- 사고가 보험계약 직후 또는 계약만료 직전에 발생
- 손실된 저장품에 판매기간이 끝난 계절상품을 포함
- 보상요구 물건이 보험계약자의 직업, 수입, 주거환경 등과 맞지 않음
- 화재시 자동식 경보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 안됨

다. 증빙서류

◦ 손해목록에 최근의 대량 구매 품 포함

◦ 손해목록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라. 일반 특성

◦ 사고당시 건물과 수용품이 팔려고 내놓은 상태

◦ 건물이나 사업체를 보험금액과 예상보상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최근에 구입

◦ 손실 저장품이 잘 팔리지 않는 상품

〈구미국의 방화피해〉

연도	미 국		영 국		독 일		오스트리아	
	피해액	점유율	피해액	점유율	피해액	점유율	피해액	점유율
1972	285	11.8	6.3	9.5			105	13.4
1975	634	18.4	30.7	23.9			144	19.6
1978	1,034	25.5	44.3	22.1			294	18.8
1981	1,658	27.8	74.0	35.2	263	19.5	332	21.0
1983	1,421	24.4	110.8	26.7	458	25.0	498	21.8
1984	1,417	24.1	134.5	34.1	313	25.5	401	20.4
1985	1,670	26.0			374	24.2	460	22.4

◦ 자료 : Arson(Munich Reinsurance Company, 1987)

◦ 피해액은 방화로 인한 백만단위의 피해액으로 미국(US\$), 영국 (£), 독일(DM), 오스트리아(Sch)임

- 계약자가 재정상 어려운 상태
- 건물과 수용품이 지나치게 초과보험
- 노사분규등으로 근무분위기가 좋지 않음

4. 방화예방을 위한 보험자의 역할

방화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전체의 30%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외국에서는 “화재보험이 방화보험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이야기될 만큼 방화가 보험자들의 최대 당면과제로 등장해 있는 상황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화재보험 손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증가하고 있는 방화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방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화관련 보험단체로는 미국의 ICAC (Insurance Committee for Arson Control)를 들 수 있는데 AIA 등 보험단체와 보험회사가 회원으로 되어 있다.

보험업계의 방화예방활동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다.

첫째, 방화의 조사연구-각 보험회사, 경찰서, 소방서 등을 통하여 방화관련 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다. 또한 수집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사례를 연구토록 한다.

둘째, 홍보-신문, 잡지, 포스터, 팸플렛, 영화 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방화의 위험성 및 대응방법을 대중에게 홍보한다.

셋째, 교육 훈련-언더라이팅·위험관리·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방화의 특징, 방화의심 화재의 처리요령, 예방 대책 등에 관하여 교육토록 한다.

넷째, 화재원인조사-사기방화로 의심이 가는 화재는 전문가와 협조하여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사기방화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상기의 일반적인 대응방안 이외에 특히 보험사기방화의 감소를 위하여 업무담당별로 직접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보험대리점 : 방화방지를 위한 1차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다. 방화를 통하여 금전상의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화의 동기를 제거한다. 보험목적물을 확인하고 초과보험이 되지 않도록 한다.

언더라이터 :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지, 그리고 건물점검 보고서와 종전의 계약상황을 검토하여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계약자의 신용도를 체크해야 한다.

손해사정인 : 소방대의 현장보고서와 소방관과의 대화를 통하여 방화, 방화의심 또는 원인불명의 화재를 조사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사기방화의 심증이 가면 즉

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손해사정책임자 : 손해사정인에게 방화감지 및 보고요령에 대하여 교육하고 경험이 풍부한 방화전문 손해사정인을 임명하거나 방화조사 전문가를 고용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방화범이 성공하여 방화행위가 조장되거나 모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홍보담당 :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방화범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를 널리 홍보하여 방화범은 반드시 죄값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방화계획을 포기토록 할 수 있다.

5. 결론

앞으로도 방화는 계속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멀지않아 전체화재의 20~3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파괴적인 범죄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조금은 여유가 있는 지금이 대응방안을 마련할 적절한 시점이다. 국가적인 차원은 물론, 이해의 직접당사자인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업계 공동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방화예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방화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험측면에서는 방화행위를 통한 금전상의 이득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 방화의 동기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